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19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고동진·강승규·김상훈

박준태 · 성일종 · 박정훈

김성원 • 박충권 • 박덕흠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 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 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3년"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 (생 략)	제15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2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3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u>3년</u>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
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u> 주한 기간이 7년</u>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u>사람</u>	
<단서 신설>	<u>사람.</u>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
	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
	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